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09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문화유산의 소유자가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유산위원회"를 "문화유산위원회(이 하 "문화유산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의8제2항 중 "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"를 "문화유산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) ①	제8조(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) ①
문화유산의 보존 • 관리 및 활용	
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조사 ·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	
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.	문화유산위원회(이하"문
	화유산위원회"라 한다)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8(지정문화유산 등의 기	제22조의8(지정문화유산 등의 기
증) ① (생 략)	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	②
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	
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	문화유산위원회
<u>산수증심의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	
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	
다.	.
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	<u><삭 제></u>
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	
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	
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	
증심의위원회를 두며, 문화유산	
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	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

④ ~ ⑥ (생 략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